

懸案分析 93-2

# 日本の 國會議員財産公開法

1993. 4.

연구자 : 박 영 도 (수석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 目 次

I. 序 說 .....	1
II. 立法經過 .....	3
III. 主要內容 .....	8
1. 立法目的 .....	8
2. 資產等報告書의 提出 .....	8
3. 所得等報告書의 提出 .....	11
4. 關聯會社等報告書의 提出 .....	12
5. 資產等報告書의 保存 및 閱覽 .....	13
6. 地方公共團體에 있어서 資產等의 公開 .....	14
7. 經過規定 .....	15
8. 기 타 .....	15
IV. 「政治倫理의 確立을 위한 國會議員의 資產等의 公開等에 관한 法律」 全文 .....	16



# 日本の 國會議員財産公開法

## I. 序 說

日本の 만성적인 金權政治의 실상은 1988년 6월에 발생한 이른바 「리크루트事件」이래 최대의 政治的 爭點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sup>1)</sup> 최근에는 「金丸信 前自民黨 副總裁의 탈세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政治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집권당인 自民黨은 이미 1989년 1월에 당내에 政治改革委員會를 발족시켜 政治倫理, 政治資金制度改革, 選舉制度改革 그리고 國會改革의 4가지 정치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그 政治改革은 現在에도 추진중에 있다. 특히 日本政界의 막후실력자였던 金丸信 前自民黨副總裁의 구속을 계기로 최근에는 정치개혁의 중점이 選舉制度改革에서 政治倫理와 政治資金制度改革 등 부패방지법적인 내용의 법개정으로 轉換되고 있다.<sup>2)</sup> 어쨌든 현재 日本에서 추진중에 있는 政治改革의 大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1) 日本의 政治改革論의 등장배경에 관한 상세한 것은 朴璨杓, 「日本政治改革論의 背景과 內容」, 立法參考資料 第2卷4號, 1990.12., 1-31面 參照.
- 2) 毎日新聞 1993年 3月 21日字.
- 3) 政治改革의 자세한 내용은 淺野一郎(編), 「解説 政治改革」, ぎょうせい 1990 ; 佐佐木毅, 「緊急政治改革」, ジュリスト 第1018號(1993.3.1.), 51-55面 參照.

〈政治改革의 主要內容〉

항 목	주 요 내 용
정치윤리개혁	①기업·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議員은 企業名 및 任職員職 등을 의장에게 신고한다는 行爲規範의 개정 ②의혹을 받은 의원에 釋明과 解明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등을 목적으로 한 정치윤리심사회규정세칙의 개정 ③政治倫理審査會의 심사대상에 정치자금문제를 추가 ④國會議員, 都道府縣議員등의 자산공개제도의 도입 ⑤收賄罪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라도 公民權停止
정치자금제도개혁	①정치자금파티의 개최에 관하여 一個人·一團體에 의한 파티권구입한도액의 설정 등 개최조건의 적정화 ②정치단체의 資産公開 ③정치자금의 株去來制限등으로의 운용금지 ④정치자금의 양적제한에 위반한 寄附의 몰수 ⑤정당에 대한 1件 1000円이하의 익명기부의 승인 ⑥選舉運動費用收支報告書에서의 기부금의 기재금액을 1件1만 5000円으로 부터 1만円으로 인하 ⑦정치가 개인에 대한 獻金禁止 ⑧정치자금의 양적제한위반에 대해 1년이하의 禁錮刑 導入 ⑨公務員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자금파티권의 판매금지
선거제도개혁	①정치활동포스터에 揭示責任者의 氏名, 住所를 기재 ②국회의원·知事·政令指定都市의 長의 선거운동기간 단축 ③선거의 공영화확대 및 供託金의 인상 ④법정선거비용의 增額 ⑤선거위반재판의 公判期日의 사전일괄지정
국회개혁	①의원입법을 충실강화하기 위한 政策秘書制度등의 창설 ②국정조사권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法制局의 강화

여기에서 소개하는 「政治倫理의 確立을 위한 國會議員의 資産 등의 公開 등에 관한 法律」은 위의 정치윤리에 관한 항목중 ④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92년 12월 16일에 제정된 法律이다. 日本에 있어서 政治家의 財産公開의 실태를 보면 關係에 관해서는 1984년 1월의 제2차 中曾根內閣이래 各大臣의 합의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國會議員一般에 관해서는 행해지지 않았

다. 그것이 이 法律의 제정에 의해 처음으로 實施되게 된 것이다. 물론 政治倫理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은 결코 財産公開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日本에서는 全國會議員을 대상으로 한 財産公開가 실현되기에 이르러 그 자체가 정치윤리의 확립으로 향한 一步前進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향후 공개될 國會議員의 財産 등의 상황을 국민이 부단히 감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法律은 최근 우리 社會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公職者의 財産公開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補完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서 소개한다.

## II. 立法經過

日本에서는 1983년 10월에 「록히드事件」의 제1심에서 田中前首相이 수탁 수뇌죄등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政治家와 金錢의 관계를 둘러싸고 政治倫理의 확립이 계속 요구되었으며, 정치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歐美의 先進諸國의 정치가의 재산을 공개하는 法制度를 계속 研究하였다. 이에 國會議員의 財産公開에 대한 法制化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때마침 리크루트事件에 의해서 심화된 국민의 政治不信의 해소가 과제가 된 1989년의 제114회 國會에서 여당인 自民黨이 「政治倫理의 確立을 위한 國會議員等の 資産等の 公開에 관한 法律案」을, 야당측이 社會·公明·民社·社民連의 4당공동으로 「政治倫理法案」을 각각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與野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어느 법안도 同國會에 제출되지 않고 終了하였다.

그 후 政治改革을 기치로 한 海部內閣이 1991년의 제121회 國會에 정치개

혁관련 3個法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野黨은 社會·公明·民社·社民連의 4당공동으로 1989년대의 것과 거의 동내용의 「政治倫理法案」을 제출하였으나, 동법안은 여야간의 협의에 의해 內閣提出의 政治改革 關聯3法을 폐기함에 따라 철회되었다. 政治改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海部 內閣을 이어 받은 宮澤內閣은 1992년 1월에 소집된 제123회 국회에서 긴급 정치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선 自民黨內에 政治改革本部를 설치하여 당으로서의 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國會議員의 資産公開에 관해서는 1989년의 안을 기본으로 한 法案骨子が 3월 5일의 政治倫理部에서 완료되어 동월 13일에 정치개혁본부가 宮澤首相에게 자산공개법의 제정등을 핵심으로 하는 緊急改革에 관한 答申을 제출하였다. 國會議員의 財産公開와 관련하여 自民黨이 마련한 法案의 토대와 野黨이 공동으로 마련한 法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항 목	자민당안	4당공동법안
대 상	국회의원의 자산(의원본인 및 배우자와 동거부양친족에 관하여 보고하고, 의원본인만을 공개로 한다. 배우자 및 동거부양친족을 포함하는 공개는 특례에 의한다)	국회의원의 자산(배우자 및 동거부양친족의 자산을 포함)
기준일	선거일	1월 1일
보고 기간	선거종료일로 부터 100일까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 自民黨 政治改革本部, 「緊急改革に関する答申」, 特別政策資料 1992年 3月 13日 參照.



항 목	자민당안	4당공동법안
자산등 종류 및 보고 사항	토지(신탁을 하고 있는 토지<자 기가 귀속권리자인 것에 한함>를 포함) 및 借地權 ◦ 소재, 면적 및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차지권에 있어서 는 당해차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소재 및 면적) ◦ 상속(피상속인으로 부터의 유 증을 포함(이하 같음)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	토지 ◦ 소재, 지목, 면적, 고정자산세 의 과세표준액 및 취득년월일  借地權 ◦ 당해차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 지의 소재 및 면적과 취득년월 일
	건물 ◦ 소재, 床面積 및 고정자산세 의 과세표준 및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	건물 ◦ 소재, 종류, 구조, 床面積,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 및 취득년월일
	예금 및 저금(당좌예금, 보통예 금, 보통저금 및 통상우편저금을 제외)과 금전신탁 ◦ 예금 및 저금의 액과 금전신 탁의 원본의 액	예금 및 저금(당좌예금, 보통예 금, 보통저금 및 통상우편저금을 제외)과 금전신탁 ◦ 예입금융기관등의 명칭, 예금 및 저금의 잔고와 수탁자의 명칭 및 신탁하고 있는 금전 의 액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1항· 2항에 규정하는 것) ◦ 종류 및 종류별의 액면금액의 총액(주권에 있어서는 주식의 명칭, 주수 및 액면금액의 총 액)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1항· 2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한함 ) ◦ 종류 및 종류별의 액면금액의 총액(주권에 있어서는 주식의 명칭, 주수 및 액면금액의 총 액)과 취득년월일 출자에 의한 권리 ◦ 출자선 및 당해출자선별의 금 액과 년월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미술공 예품(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 하는 것에 한함) ◦ 종류 및 수량	동산(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 하는 것에 한함) ◦ 품목 및 수량과 품목별 취득 가액 및 년월일

항 목	자민당안	4당공동법안
자산등 종류 및 보고 사항	<p>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권리(양도 할 수 있는 것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프장의 명칭</li> </ul>	<p>골프장 기타 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리(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 하는 것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프장 기타 시설의 명칭 및 취득가액과 년월일</li> </ul>
	<p>대부금(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것을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금의 액</li> </ul>	<p>대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금의 총액</li> </ul>
	<p>차입금(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 로 부터의 것을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입금의 일부</li> </ul>	<p>차입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입금의 총액</li> </ul>
소득· 수입 보고	<p>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전년 1년간을 통하 여 국회의원이었던 자에 한함)</li> </ul>	<p>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국회의원인 동안의 수입)</li> </ul>
	<p>보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분의 소득에 관계된 총소 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에 관 계된 각종소득금액과 증여세 의 과세가격. 단 년간소득이 1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발생사유와 금액 또한 의원 및 행정관청으로 부터 지급된 것은 그 취지</li> </ul>	<p>보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 1년간에 받은 수입(정치 자금규제법 또는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해 보고된 것을 제외)에 관해 그 총액 및 1회 의 수입금액이 30만엔을 초과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기인 이 된 사실과 그 금액 및 월 일(전년분의 소득세 및 증여 세의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li> </ul>
	<p>보고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4월 1일부터 동월 30일 까지의 기간</li> </ul>	<p>보고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까지의 기간</li> </ul>
관련 회사 등의 보고	<p>보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를 받고 회사 기타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의 임 원, 고문 기타의 직에 취임하 고 있는 경우</li> </ul>	<p>보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li> <li>회사 기타 단체의 임원등의 직에 취임하고 있는 경우</li> </ul> <p>명칭,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 회사 기타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 임직명 및 보수의 유무</p>

항 목	자민당안	4당공동법안
관련 회사 등의 보고	기준일 ° 4월 1일	기준일 ° 1월 1일
	보고일 ° 매년, 4월 1일부터 동월 30일 까지의 기간	보고일 °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의 기간
기타	보고서의 이의에 대한 조치 ° 정치윤리심사회의 심사대상이 된다(정치윤리심사회규정의 개정)	보고서의 이의에 대한 조치 ° 정치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
	보고서의 공표방법 ° 누구라도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의 공표방법 ° 관보에 의해 공표한다.
	보고서의 보존기간 ° 7년간	보고서의 보존기간 ° 10년간

이 答申에 의해 성안된 안을 토대로 3월말부터 政治改革協議會 및 실무자 회의에서 여야간에 의견이 교환되어, 5월 27일 共產黨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당이 합의에 도달하여 이 法案은 同國會에 제출되어 성립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會期末에 이르러 이른바 「PKO協力法案」의 채택을 둘러싸고 社會黨이 정치개혁협의회의의 참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 提出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1992년 10월말에 소집된 제125회 國會에서 겨우 이 법률이 성립하게 되었다. 즉 이 法案은 우선 11월 27일의 衆議院議員運營委員會 國會法改正 등에 관한 小委員會에서 협의결정된 후, 12월1일의 衆議院議員運營委員會에서 위원회제출의 법률안으로 하는데 협의결정되어 같은 날 중의원본회의에서 全員一致로 가결되었다. 이어 동월 10일의 參議院議員運

營委員會 및 本會議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성립하였다. 동 법률은 동월 16일에 1992년 法律 제100호로서 공포되어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法律의 細則으로서 「國會議員의 資産等の 公開에 관한 規程」이 1992년 12월 16일에 制定되었다.

### Ⅲ. 主要內容<sup>5)</sup>

#### 1. 立法目的

이 法律은 제1조에서 「國會議員의 資産상황등을 國民의 부당한 監視와 批判下에 두기위하여 國會議員의 資産등을 공개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政治倫理의 확립을 기하고 나아가 民主政治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立法趣旨를 밝히고 있다.

#### 2. 資産等 報告書의 提出

國會議員은 그 임기개시일에 가지는 다음의 資産에 관하여 각각 그것을 기재한 資産等 報告書를 동일로 부터 起算하여 100日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國會議員이 속하는 議院의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조 1항).

---

5) 森 剛,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國會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 ジュリスト 第1018號(1993. 3. 1.), 94-98面 参照.

번호	자산명	세 부 내 역
1	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하고 있는토지(자기가 귀속권리자인 것에 한함)를 포함</li> <li>◦ 소재, 면적 및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li> <li>◦ 상속(피상속인으로 부터의 유증을 포함)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li> </ul>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의 임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권리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소재 및 면적</li> <li>◦ 상속(피상속인으로 부터의 유증을 포함)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li> </ul>
3	건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 상면적 및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li> <li>◦ 상속(피상속인으로 부터의 유증을 포함)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li> </ul>
4	예 금 저 금 우편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은 제외</li> <li>◦ 보통저금은 제외</li> <li>◦ 통상우편저금은 제외</li> </ul>
5	금전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신탁의 원본의 액</li> </ul>
6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거래법 제2조1항·2항에 규정한 유가증권에 한함</li> <li>◦ 종류 및 종류별의 액면금액의 총액(주권에 있어서는 주식의 상품명, 주수, 액면금액의 총액)</li> <li>◦ 주권이란 자본의 액이 1억엔이상의 주식회사의 주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 또는 점두매매유가증권으로서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권에 한함(규정 §1②)</li> <li>◦ 유가증권의 종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및 기타(규정 §2①)</li> </ul>
7	자동차 선 박 항공기 미술공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및 수량</li> <li>◦ 미술공예품은 취득가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li> <li>◦ 자동차의 종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경자동차 및 기타(규정 §2②)</li> <li>◦ 선박의 종류는 기선, 범선 및 기타(규정 §2③)</li> </ul>

번호	자산명	세 부 내 역
7	자동차 선박 항공기 미술공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공예품의 종류는 회화, 조각, 서화, 자기 도기, 염기, 유리기, 검도 및 기타(규정 §2⑤)</li> <li>◦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및 기타(규정 §2④)</li> <li>◦ 이상의 것은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미 증여 또는 상속된 것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함</li> </ul>
8	골프장이용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할 수 있는 것에 한함</li> <li>◦ 골프장의 명칭</li> </ul>
9	대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것은 제외</li> <li>◦ 대부금의 액</li> </ul>
10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것은 제외</li> <li>◦ 차입금의 액</li> </ul>

이 조항이 本法의 핵심적인 조항이며, 선거마다 당선된 國會議員에 대해 가지는 주된 資産等を 보고시킬 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보고의 대상이 되는 資産等 및 報告事項은 각료의 자산공개와 거의 같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關係의 경우는 배우자등의 자산등도 공개되는데 대해 國會議員의 경우는 本人이 가지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이전부터 野黨側은 배우자등의 자산까지 그 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野黨의 政治倫理法案에서는 배우자 및 국회의원인 부양하는 同居의 親族의 자산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緊急改革의 실현이라는 각당일치의 의견 및 프라이버시보호 등의 이유로 그것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自民黨의 見解에 따른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자산등에는 外國에 있는 것도 포함된다(동법규정 제1조1항). 동 법률은 단순히 「國會議員이 가지는」으로 表現하고 있으며, 國內에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外國에 있는 것을 제외할 실질적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國會議員은 그 임기개시일로 부터 매년 새로이 가지게 된 위에서 열거한 자산등에 있어서 12月 31日에 가지는 것에 관하여 각각 위의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資産等 補充報告書를 그 이듬해의 4월1일부터 동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그 國會議員이 속하는 議院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조2항).

본항은 선거마다 제출되는 資産等報告書만으로는 반드시 자산등의 상황의 변화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補充하기 위하여 매년 어느 정도 자산등이 증가하였는가를 報告하게 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매년 새로이 가지는 것이 된 資産等이라도 12월 30일이전에 賣却等에 의해 가지지 않게 된 것에 관해서는 報告할 義務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새로이 가지게 된」 것이 있는 것으로 부터 前年부터 가졌던 資産等에서 감소한 것에 관해서는 報告義務가 없으며, 이 때문에 매년 제출되는 資産等 補充報告書만을 보면 오로지 자산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를 改善하기 위해 토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地上權 또는 토지의 賃借權, 건물에 관해서는 상호 교환매매된 경우 그 趣旨를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규정별표양식 제2 주4).

### 3. 所得 等 報告書의 提出

國會議員(매년 1년간을 통해서 국회의원이었던 자에 한함)은 전년분의 所得에 관련한 총소득금액 및 山林所得金額에 관련한 각종소득의 금액(당해금액이 100萬円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 및 그 基因이 된 사실) 및 동년중에 있어서 贈與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동년분의 贈與稅가 부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재산에 관련한 贈與稅의 과세가격을 기재한 所得等 報告書를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그 國會議員이 속하는 議院의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

國會議員과 金錢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시점에서 資產 (Stock)을 공개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일정의 기간에 있어서 收入 또는 所得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래는 1985년에 各議院에서 정한 「行爲 規範」에서 일정의 수입가운데 所得金額 및 受贈財産의 가액의 합계액이 전년1년간의 歲費相當額의 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의원의 의장에게 申告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資產公開의 法制化에 수반하여 본법에 흡수한 것이다. 총소득금액에 관련한 각종소득의 金額이란 구체적으로 (1)사업소득금액, (2)부동산소득금액, (3)이자소득금액, (4)배당소득금액, (5)급여소득금액, (6)잡소득금액, (7)양도소득금액, (8)一時소득금액, (9)토지등의 사업·잡소득금액, (10)단기양도소득금액, (11)장기양도소득금액, (12)주식등의 사업·양도·잡소득금액을 말한다. 또한 所得等報告書의 제출은 납세신고서의 寫本을 제출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규정 제5조2항). 종전의 行爲規範에 의거한 提出書類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다.

#### 4. 關聯會社 等 報告書의 提出

國會議員은 매년 4월 1일에 報酬를 받는 회사 기타 법인(법인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의 任員, 顧問 기타 직에 취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 기타 법인의 名稱 및 住所, 當該職名을 기재한 關聯會社等 報告書를 동월 2일부터 30일까지 그 國會議員이 속하는 議院의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헌행법제상 國會議員이 민간회사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 다수의 議員이 민간회사의 任員에 취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議員의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종래는 行爲規範에서 일정의 보수를 받는 기업등의 임원에 취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當該企業등의 명칭, 職位등을 각의원의 議長에게 신고할 것이 義務化되었다. 그것이 資産公開를 법제화하는 데 수반하여 額의 過多를 불문하고 보수를 받는 임원직에 한하지 않고 會社等の 職에 취임한다면 본법의 報告義務가 부과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無報酬로 기업등의 任員職에 취임하고 있는 경우는 1992년 12월의 개정후의 行爲規範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등의 名稱, 任員職등을 각의원의 議長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5. 資産等 報告書의 保存 및 閱覽

資産等報告書 및 자산등보충보고서, 所得等報告書와 관련회사등보고서는 이들을 수리한 各議院의 議長에서 이들을 제출하여야 할 기간의 末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7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保存하여야 한다(제5조1항).

본항은 報告書의 열람청구에 대비하여 各議院의 議長에게 보고서의 보존의무를 과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保存期間이 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參議院議員의 임기가 6년인 점을 배려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各議院의 의장에 대해 보존되어 있는 報告書의 閱覽을 청구할 수 있다(제5조2항). 본항이 資産公開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며 公開의 방법으로서 政治資金規制法의 收支報告書 등과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보존하고 있는 者에 대한 열람청구라는 形式을 채택한 것이다. 다만 제출된 報告書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報告書의 열람은 제출기간의 末日의 다음날로 부

터 起算하여 60일을 경과하는 날 다음날부터 가능하다(규정 제10조1항). 제출된 報告書를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事務節次에 일정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報告書의 열람은 各議院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執務時間 중에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보고서는 위이외의 場所에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동조 제3항), 정중하게 취급하고, 破損·汚損 또는 加筆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4항). 그리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閱覽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열람을 禁止할 수 있다(동조 제5항). 그리고 이 報告書의 열람에 관해서는 보고서의 寫本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나 立法者로서는 보고서의 寫本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6. 地方公共團體에 있어서 資産 등의 公開

都道府縣 및 政令指定都市의 의회 및 의원, 都道府縣知事 및 市町村長(특별구의 區長을 포함)의 자산등의 공개에 관해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해 본법의 규정에 의거한 國會議員의 資産 등의 공개의 조치에 준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

본조는 政治倫理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정치를 담당하는 長이나 縣議會 議員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資産의 公開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설정된 규정이다. 여기에서 「準하여」라고 한 것은 본법과 條例와 그 내용이 완전히 同一할 필요는 없으나, 兩者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허용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나 具體적으로는 개개의 판단에 맡겨진다고 解釋되고 있다.

## 7. 經過規定

본법의 시행일에 있어서 國會議員인 자는 동일에서 가지는 위의 2.에서 열거한 資産等에 관하여 각각 제시한 사항을 기재한 資産等 報告書를 동일로 부터 起算하여 10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국회의원이 속하는 議院의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제2항). 이 규정은 자산등보고서에 관해서는 본법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選舉까지는 提出義務가 없으므로 최초로 제출되는 資産等 補充報告書의 전제가 되는 자산등 보고서를 제출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본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資産等 報告書도 제5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閱覽의 대상이 된다(부칙 제3항).

## 8. 기 타

報告書를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虛僞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罰則에 의한 制裁는 없으나, 衆議院議員에 대해서는 1992년 12월 1일에 행해진 衆議院 政治倫理審査會 규정의 개정에 의해 새로이 政治倫理審査會의 심사의 대상으로 되도록 하고 있다(衆議院政治倫理審査會 규정 제1조 및 衆議院政治倫理審査會 規程 제1조에 규정하는 法令을 정하는 件 참조). 이에 대해 參議院議員에 대해서는 參議院 政治倫理審査會 規程의 개정안이 제125회 國會에서 계속심의회가 되고 있으므로 본법이 시행된 시점에서는 政治倫理審査會의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IV. 「政治倫理의 確立을 위한 國會議員의 資産等の 公開等에 관한 法律」

##### 全文

제 1 조(目的) 이 법률은 국회의원의 자산의 상황등을 국민의 부단한 감시와 비판하에 두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자산등을 공개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치윤리의 확립을 기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資産等報告書等の 提出) ① 국회의원은 그 임기개시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자는 그 선거의 기일로 하며, 개정 결정 또는 조상보충에 의해 당선인으로 결정된 국회의원은 그 당선효력발생일로 한다. 이하 다음항에서도 같다)에 가지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자산 등에 관하여 당해자산등의 구분에 상응하는 당해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자산등보고서를 동일로 부터 기산하여 10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국회의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신탁하고 있는 토지<자기가 귀속권리자인 것에 한함>를 포함)

소재, 면적 및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 및 상속(피상속인으로 부터의 유증을 포함. 이하 동일)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의 임차권

당해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와 면적 및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

3. 건물

소재, 상면적 및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액 및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지

4. 예금(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을 제외), 저금(보통예금을 제외) 및 우편  
저금(통상우편저금을 제외)  
예금, 저금 및 우편저금의 액
  5. 금전신탁  
금전신탁의 원본액
  6.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한  
함)  
종류 및 종류별액면금액의 총액(주권에 있어서는 주식의 상품명, 주  
수 및 액면금액의 총액)
  7.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미술공예품(취득가액이 백만엔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종류 및 수량
  8. 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권리(양도할 수 있는 것에 한함)  
골프장의 명칭
  9. 대부금(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것을 제외)  
대부금의 액
  10. 차입금(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부터의 것을 제외)  
차입금의 액
- ② 국회의원은 그 임기개시일후 매년 새로이 가지게 된 전항각호에 열거  
한 자산등에 있어서 12월 31일에 가지는 것에 관하여 당해자산등의 구분  
에 상응하는 동항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산등보충보고서를 그  
익년의 4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그 국회의원이 속하는 의원  
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所得等報告書の提出) 국회의원(전년 1년간을 통하여 국회의원이었던 자<임기만료 또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임기종료에 의해 국회의원이 아닌 기간에 있는 자로 당해임기만료 또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선거에 의해 다시 국회의원으로 된 자에 있어서는 당해국회의원이 아닌 기간을 제외한 전년 1년간을 통해서 국회의원이었던 자>에 한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및 과세가격을 기재한 소득등보고서를 매년 4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의 기간에(당해기간내에 임기만료 또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임기종료에 의해 국회의원이 아닌 기간이 있는 자로 당해임기만료 또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선거에 의해 다시 국회의원이 된 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그 국회의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분의 소득에 관하여 동년분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소득과 관련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백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 및 그 기인이 된 사실)
  - (1) 총소득금액(소득세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총소득금액을 말한다) 및 산립소득금액(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산립소득금액을 말한다)에 관계된 각종소득의 금액(동법 제2조제1항 제22호에 규정하는 각종소득의 금액을 말한다).
  - (2) 조세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된 소득의 금액으로서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
2. 전년중에 있어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동년분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재산에 관계하는 증여세의 과세가격(상속세법 제21조의 2에 규정하는 증여세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제 4 조(關聯會社等報告書의 提出) 국회의원은 매년 4월1일에 보수를 받는 회사 기타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 고문 기타의 직에 취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 기타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당해 직명을 기재한 관련회사등보고서를 동월 2일부터 동월30일까지의 기간(당해기간내에 임기만료 또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임기종료에 의해 국회의원이 아닌 기간이 있는 자로 당해임기만료 또는 중의원의 해산에 의한 선거에 의해 다시 국회의원이 된 자에게는 동월 2일부터 다시 국회의원이 된 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그 국회의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資產等報告書等の 保存 및 閱覽)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산등보고서 및 자산등보충보고서, 소득등보고서와 관련회사등보고서는 이를 수리한 각의원의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의 말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7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누구라도 각의원의 의장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존되어 있는 자산등보고서 및 자산등보충보고서, 소득등보고서와 관련회사등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細則)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국회의원의 자산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조(地方公共團體에 있어서 資產等の 公開) 도도부현 및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

(특별구의 구장을 포함)의 자산등의 공개에 관해서는 평성 7년 12월 30일  
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의 조치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

1. 이 법률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자는 동일에 가지는 제2조 제  
1항각호에 열거하는 자산등에 관하여 당해자산등의 구분에 상응하는  
당해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산등보고서를 동일로 부터 기  
산하여 백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국회의원인 자는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산등보고서에 관해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懸案分析 93-2 日本의 國會議員財産公開法

---

1993年 4月 15日 印刷

1993年 4月 20日 發行

發行人 李世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한국컴퓨터산업(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1,200원

